

#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4. . .  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에 국한되지 않고, 화재안전 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화재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8조 화재안전시설 설치 사항 신설
  - 당 초:  
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위험 점검, 아크차단기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,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변 경:  
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위험 점검,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 시설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,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「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8조 중 “아크차단기” 를 “아크차단기 및 화재안전시설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<u>필요한</u>  <u>사항과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경제안정에 이바지함</u>_____</p>	<p><u>&lt;개정안과 같음&gt;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8조(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)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위험 점검, <u>아크차단기</u> 설치 등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, 화재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8조(전통시장 화재 안전 사업 지원)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— <u>아크차단기 및 화재안전시설</u>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            _____</p>